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과 업 지 시 서

2026. 2.

시 설 관 리 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INTERNATIONAL ST. MARY'S HOSPITAL



입찰공고 내용

[시설관리팀 제2026- 01호]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입찰공고

I

개요

- 입찰건명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입찰공고
- 계약기간 : 24개월 (2026. 3. 1. ~ 2028. 2. 29.)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격리의료폐기물, 조식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외..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방법 : kg당 단가(수집, 운반 및 소각, 전용용기, 태그, 박스테이프 포함)
- 처리(예정)물량: 565ton (연간, 2025년 기준으로 예정물량은 병원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음)
- 입찰일정

입찰건명	입찰공고	입찰등록 마감	우선협상 대상 선정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2026. 2. 11(수) ~2. 20(금)	2026. 2. 20(금) 15:00	2026. 2. 23(월)

- 입찰서 제출 및 장소 : 2026. 2. 20(금), 15:00 / 국제성모병원 시설관리팀 사무실

[입찰등록 및 제출 마감]

- 입찰등록 일시 : **2026. 2. 20(금), 15:00까지**
- 등록접수 및 제출장소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시설관리팀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 국제성모병원 시설관리팀]
- 입찰 금액 투찰 : 제안서 제출 시 밀봉건적으로 동봉 제출(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시설관리팀(032-290-3904)으로 문의바랍니다.



9.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 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수집·운반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중간처리업 또는 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 수급이 가능함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업체

10. 입찰등록 서류

- 가. 입찰참가신청서(병원 소정양식) 1부
 -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마. 위임장(위임시) 1부
 - 바.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 사.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 1부
 - 아.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1부
 - 자. 참가업체 본사 약도 1부
 - 차. 청렴계약 이행각서, 약속서, 보안각서 각 1부
-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1.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12.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입찰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란에는 kg당 단가를 표기하여야 함
- 나.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시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하여야 함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함)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본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본원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병원의 제안요청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입찰등록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입찰참가등록업체는 입찰 및 평가·협상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입찰공고는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병원 시설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 내역 및 제출 양식은 병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바랍니다.



II

제안 용역내용

1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시방서

1. 의료폐기물의 정의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5호)

2. 의료폐기물 종류별 분류

가.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나. 위해의료폐기물

- 1) 조직물류폐기물
- 2) 병리계폐기물
- 3) 손상성폐기물
- 4) 생물·화학폐기물
- 5) 혈액오염폐기물

다. 일반의료폐기물

3. 위탁처리 목적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제반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활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계약당사자의 자격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차량, 장비, 시설, 인력, 소각장, 기타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하자가 없는 건실한 업체여야 한다.

5.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 3. 1 ~ 2028. 2. 29(24개월)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중 부득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문제(폐업, 영업정지 등)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병원의 피해 일체에 대하여 위탁업체가 배상한다.



6.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 가. 위탁업체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병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과태료·과징금 등은 위탁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나. 병원은 위탁업체의 수거일정, 전용용기(골판지 박스) 및 RFID Tag 지급의 지체로 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위탁처리 비용

- 가. 위탁처리비는 의료폐기물 종류별 구분 없이 kg당 계약단가로 통일한다.
- 나. 위탁처리비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물품(전자테그, 전용용기, 박스테이프 등) 운반·처리(소각)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다. 위탁처리비의 경우 병원과 위탁업체 모두가 타당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8. 처리비용 지급

병원은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을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탁업체에게 지급한다.

9.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기준

- 가. 위탁업체는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 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위탁처리 한다.
- 나. 의료폐기물은 매주 4회 이상 수거하여야 하며,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거한다.
- 다. 위탁업체는 계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허가취소, 영업정지,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병원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병원의 피해 일체에 대하여 위탁업체가 배상한다.
- 라. 위탁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이 요청한 의료폐기물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마. 위탁업체는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시, 재위탁 또는 불법처리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민·형사상)은 위탁업체가 가진다.
- 바. 위탁업체는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경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 담당자에 통보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 위탁업체는 의료폐기물 보관창고에서 반출할 경우 반드시 병원 담당직원 확인(무게책정 등) 후 위생적으로 작업하여 처리한다.
- 아. 위탁업체는 폐기물 전용용기를 성상별로 구분하여 병원에 충분히 비치하고, 추가 요청 시 즉시 공급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신청서(합격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 위탁업체는 수집·운반 중 의료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차. 위탁업체는 의료폐기물 반출 후, 보관창고를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변에 냄새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카. 폐기물 반출 시, RFID System(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을 이용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타.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소각하여야 한다.

10. 계약해지

병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된다.

- 가. 본 계약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 나. 위탁처리에 필요한 의무이행 및 지시사항을 태만히 하여 병원으로부터 시정요구 2회 이상이 발생할 경우
- 다.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야기 하였을 경우
- 라. 병원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마. 본 계약업무를 이행하는데 능력이 없다고 병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 바. 휴업·폐업·영업정지 등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 사. 계약기간 중 부정한 행위 등으로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아. 계약해지 통보는 서면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

